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의원	이수현.신교선의의원	소 속	평창군의의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	일 자	질의 : 2001년 6월25일 답변 : 2001년 6월25일
<질문요지>			
○ 봉평체육공원 전기요금 지급			

□ 전기료 기본료보조 현황

시 설 명	기본료(월)	예산액	비 고
평창읍사무소 테니스장	120,000	1,440,000	
미탄면사무소 테니스장	157,200	2,002,000	
봉평면체육공원 테니스장		2,000,000	1회추경요구액

□ 사 유

- 봉평면체육공원사업중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에 야간조명시설을 2000년 9월완료하여 봉평테니스협회에서 계속 사용하던중
- 사용자측(봉평테니스협회)에서 부담해야할 전기료에 대해서 한번도 납부하지 않아
- 2001년1월 전기계량기를 한국전기공사강릉지사에서 폐쇄조치 하였음

□ 진행사항

- 봉평테니스협회장과 수차 납부를 독려 하였으나 기본료가 비싸게 책정되어 납부할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
- 한국전기공사강릉지사에서 전기사용료체납에 대한 독촉(내용증명)을 함에따라 평창군의 명예실추를 예방코자 추경에 반영

□ 추진계획

- 현재 평창군공공체육시설운영조례(안)를 입법예고중이며 의회승인후 빠른시일내에 위탁관리 협의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전환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할 계획임

가평. 한전지사장
영입운영부 직원 천용근



21011

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255번지
강릉지사 영입운영부 직원 천용근

www.kepco.co.kr
☎ 650-1346

FAX 650-1123

문서번호 82417-20630103-794

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-2

시행일 2001.04.25

수신 평창군수
참조 문화관광과장

232-800

제목 체납전기요금 납부 독촉

1.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평소 전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.

2. 귀 군의 명의로 사용되었던 봉평체육공원의 해지 미수전기 요금이 미납되어 당사 수금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 독촉하오니 기일내에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체납금액: ₩ 1,735,300('00.10-'01.2월분)

나. 납부방법: 당사 사업소장 구좌(257-01-141612 농협 한전강릉지사장)

다. 납입기일: '01.5.2 12:00까지

3. 아울러 위 기간내에 요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중이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선 결	하리	정액		
집수일시	2001. 5. 02	계좌	231	영
처리과				

선 결	문수동	정액	문수동	
집수일시				
처리과	문화관광과			



강릉지사장



이 우편물은 2001년 4월 30일
등기제출을 위한 내용 증명
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
강릉동부우편지급소장